

초기 한일회담(1차-3차) 시기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 대한 외교사적 연구

엄태봉

대진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강의교수, 한일관계 전공

missum1118@hotmail.com

- I. 머리말
 - II. 한일회담 개최 이전의 문화재 반환에 대한 한일양국의 인식
 - III. 초기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
 - IV. 맺음말
-

I.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초기 한일회담(1차-3차)의 문화재 반환 문제 논의 과정을 외교사적으로 검토하고 그 특징을 밝히면서, 그것이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는 기본관계문제 및 청구권 문제와 더불어 과거사 청산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강제적이고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반환하라는 한국 측의 입장과 정당한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반출했기 때문에 문화재 반환의 의무는 없지만, 약간의 문화재를 기증하겠다는 일본 측의 입장이 크게 대립했다. 또한 어떠한 문화재들이 반환 혹은 기증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에서도 한일 양국의 대립이 이어졌다.

이러한 문화재 반환 문제는 다른 주요 의제들과 마찬가지로 제7차 회담의 타결까지 수많은 회의와 14년간의 기나긴 시간을 필요로 했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문화재 반환 교섭은 각 회담 시기 별로 그 전개 과정이 각각 다르며, 그에 따라 각 회담 시기마다 그 특징이 존재한다. 따라서 문화재 반환 교섭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각 회담 시기에 대한 문화재 반환 문제의 논의 과정과 특징을 검토하고, 그 의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입각하여 초기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 논의 과정과 그 특징을 검토하고, 그것이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 가지는 의미를 밝힐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초기 한일회담에 대해 문화재 반환 문제가 청구권 문제의

* 본고는 필자의 박사논문인 「日韓文化財問題の構造と限界-1951~1965年」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된 것이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현물배상 요구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졌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으며,¹ 이 시기에 일본 측은 외무성의 문화재 반환 관련 선례조사와 문화재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동 문제의 기본적인 원칙을 만들었다²고 논했다. 또한 초기 한일회담 시기의 한국 측의 문화재 반환 요구는 식민지 시기의 조선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이러한 한계는 식민지 지배의 ‘청산’이 아닌 ‘잔상’이 드러난 것이었다고 논했다.³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초기 한일회담에 대한 평가와 해당 논점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해당 시기의 논의 과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문화재 반환 교섭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초기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 논의가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⁴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다. 첫째, 내용적인 측면이다. 초기 한일회담 시기의 문화재 반환 문제는 청구권 문제와 함께 청구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청구권 문제는 한일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였다. 이 시기에 문화재 반환 문제는 청구권 문제와 함께 논의되었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4차 회담 이후 문화재소위원회와 전문가회의가 설치되어 문화재 반환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
- 1 국성하,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협상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5집(2005), 369-393쪽.
 - 2 조윤수, 「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교섭: 일본 정부의 반환 문화재 목록 작성과정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제51호(2016), 125-165쪽.
 - 3 류미나, 「일본의 문화재 ‘반환’으로 본 식민지 지배의 ‘잔상’, 그리고 ‘청산’의 허상」, 『일본역사연구』 제32집(2010), 213-241쪽.
 - 4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 이외에 문화재 반환 문제의 교섭 과정을 검토한 대표적인 연구로 高崎宗司, 「日韓會談における文化財返還交渉について」, 『朝鮮史研究会論文集』 제23호(1986); 박훈,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의 전개과정과 쟁점」,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2: 의제로 본 한일회담』(2010); 엄태봉, 「한일회담 중단기의 문화재 문제에 관한 연구」, 『일본공간』(2017); 엄태봉, 「제6차 한일회담 시기의 문화재 반환 교섭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제60호(2018) 등이 있다.

것에 비하면, 초기 한일회담 시기의 논의는 부족했다. 둘째, 시간적인 측면이다. 제1차 회담이 약 6개월, 제2차 회담이 약 3개월, 제3차 회담이 불과 약 2주 만에 종료되었는데, 초기 한일회담 시기 자체가 짧았기 때문에 문화재 반환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이 초기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는 청구권 문제와 함께 논의된 점, 초기 한일회담 자체가 짧았다는 점으로 인해 제4차 회담 이후의 논의에 비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 선행연구에서도 초기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 논의가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초기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그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기의 논의는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본고는 이와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먼저 제Ⅱ장에서는 한일회담 개최 이전에 한일 양국이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제1차 회담부터 제3차 회담까지의 문화재 반환 논의 과정과 그 특징을 검토하고, 이 시기의 논의가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 갖는 의미를 고찰한다. 제Ⅳ장에서는 본론의 논의를 요약·정리한다.

Ⅲ. 한일회담 개최 이전의 문화재 반환에 대한 한일양국의 인식

1. 한국의 대일배상요구조서와 약탈재산으로써의 문화재

1)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의 문화재 반환에 관한 움직임

해방 이후, 남한 지역에서는 대일강화회의에 대한 참가 노력과 함께 대일배상요구에 관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민중들은 일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요구, 전쟁피해자단체의 조직과 국회청원, 미군정청의 전쟁피해조사에 대한 협력과 피해신고 등의 형태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⁵

문화재 반환과 관련해서는 진단학회가 1945년 12월에 일본에게 약탈된 도서 및 보물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미군정청에게 제출했다.⁶ 동 목록은 진단학회가 일본에게 약탈된 도서의 반환을 미군정청을 통해 GHQ에게 제출할 것을 1945년 10월 30일에 결의한 후, 일본의 공립·사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 보관된 조선 유래 문화재 목록과 일본의 식민지 지배 당시 반출된 품목을 조사하고⁷ 같은 해 12월에 서적 122종, 미술품 및 골동품 837종 등 총 1,049종을 정리한 것이었다. 진단학회의 이와 같은 문화재 반환 시도는 결과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해방 이후, 문화재 반환이 민간단체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는 점, 그리고 동 목록이 한국정부가 1949년 3월에 작성한 『대일배상요구조서』 제1권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⁸

한편 남한과도정부는 1947년 8월 13일에 열린 정무회의에서 대일배상문제를 위한 ‘대일배상요구조건 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재무·외무·상무

5 오오타 오사무, 『한일 청구권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0), 20쪽.

6 森田芳夫, 『韓国における国語・国史教育: 朝鮮王朝期・日本統治期・解放後』 67, 『解放後の震檀学会の活動』(原書房, 1987), 386쪽.

7 이홍직, 『한 사가의 유훈』(통문사, 1972), 82쪽.

8 이 시기의 진단학회의 문화재 반환에 관한 활동은 長澤裕子, 『解放後朝鮮の対日文化財返還要求と米国-日本の敗戦から対日講和条約締結まで(一九四五~一九五一年)』, 『朝鮮史研究会論文集』第五十五集』(2017)을 참조.

등의 실무부처의 책임자를 각각 위원으로 임명했다.⁹ 남한과도정부는 동 위원회의 조사를 바탕으로 대일강화회의의 참가와 미국을 통한 대일배상요구안 제출을 계획하고 있었다.¹⁰ 이와 관련하여 당시 조선은행 사무부처장이었던 이상덕은 1948년 1월에 '대일배상요구의 정당성'을 작성했다. 이것은 1947년 여름부터 1948년 초기까지 대일배상문제를 준비하고 있었던 정부관계자들 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써,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조선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고,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동원도 강제적이었으나, 보복이 아닌 피해회복의 의무로써 대일배상을 요구한다는 것이 그 취지였다.¹¹ 이상덕은 이와 함께 대일배상의 '기본적 표준'을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일배상요구 10항목을 작성했다.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것은 제1항목의 '약탈에 의한 손해'로, 그 내용은 "일본이 자의 또는 강제적으로 반출한 국보미술품, 문헌, 유물, 그 외의 역사적 유물의 반환, 또는 보상"¹²한다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이상덕의 '대일배상요구의 정당성'에서 당시의 남한과도정부는 강제적인 식민지 지배 하에서 불법적으로 약탈·강탈된 문화재를 일본에게 반환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일관된 입장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대일배상요구의 성격을 지닌 문화재 반환이라는 인식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틀 후에 열린 이승만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표명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제의 사십 년 한국통치 기간 중 가져간 예술품, 역사기록물 전부의 반환을 요구할"¹³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화재 반환에 대한 이와 같은 이승만 대통령의

9 《경향신문》, 1947년 8월 23일자.

10 《서울신문》, 1947년 8월 27일자.

11 이상덕, 「대일배상의 정당성」, 『신천지』 1월호(1948), 32쪽.

12 이상덕(1948), 위의 글, 33-34쪽.

13 《동아일보》, 1948년 8월 20일자.

관심은 한일회담에 참가한 김용식의 회고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김용식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일회담 개최 이전부터 “임진왜란 때부터 일인이 가져간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반드시 반환받아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반드시 문화재 반환을 실현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한일회담 개최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문화재 반환이었고, 제1차 한일회담 당시 주일대표부가 일본 측에게 제출한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협정요강 한국 측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지만, “문화재 반환을 빠른 시일 내에 실현”시킬 것을 주일대표부에게 지시했다고 한다.¹⁴

김용식의 회고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한일회담의 주요 의제 중에서 문화재 반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외교자료에서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화재 반환 문제가 제1차 회담부터 논의된 것, 회담 중단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¹⁵ 제4차 회담에서 청구권 문제보다 더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을 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문화재 반환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대일배상요구조서』와 한일회담 사전조사의 문화재 반환

이상에서 검토한 것처럼 대일배상요구 준비와 이승만 대통령의 문화재 반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1949년에 작성된 『대일배상요구조서』(이하, 조서)의 제1항목으로 공식화된다. 당시 법무부 조사국장이었던 홍진기는 한일병합조약, 배상, 재일한국인, 귀속재산 등의 처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을 할 ‘대일강화회의준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14 김용식, 『새벽의 약속: 김용식 외교 33년』(김영사, 1993), 249쪽.

15 김동조, 『회상 30년 한일회담』(중앙일보사, 1993), 98쪽. 김동조의 회고에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 측이 기증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제로 빼앗겼던 우리 것을 되찾아 오는데 그런 말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일본이 기증이란 말을 고집하는 한 받아 와선 안 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준비를 비밀리에 진행할 것, 기획처 안에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면서¹⁶ 1949년 2월에 '대일배상청구 조사심의회'가 조직되었다. 한국정부는 각 부처들에게 대일배상요구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작성된 것인 조서였다. 이것은 한국정부에게 있어서 한일회담 개최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이었다.¹⁷

1949년 3월 15일, 조서 제1권이 완성되었다. 서문에서 대일배상요구의 근거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로 인해 조선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일본의 배상은 당연한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그것은 “보복의 부과(賦課)가 아니고 희생과 회복을 위한 이성적 권리의 요구”라고 밝히고 있다.¹⁸ 조서 제1권의 내용은 1949년 3월 1일 현재에 판명된 지금, 지은, 서적, 미술품 및 골동품, 선박, 지도원판 등 일본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현물피해 목록이었다. 제2권은 같은 해 9월에 완성되었는데, 제1권의 현물피해 목록이 제1부가 되고, 제2부의 '확인채권지부', 제3부의 '중일전쟁 및 태평양 전쟁에 기인한 인적·물적 피해지부', 제4부의 '일본정부의 저가수탈에 의한 피해지부'로 구성되었다. 조서에서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로 서적, 미술품, 골동품에 대한 요구항목이 게재되어 있었다. 그 내용으로 고서적 212종, 수품(手品) 및 골동품 827종이었다.¹⁹ 여기에 게재된 항목들은 한일회담에서 한국 측이 반환을 요구한 문화재의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문화재 반환 문제의 기초자료가 되었다.

한편 한국정부는 1951년 7월 초순경, 대일강화회의에 한국이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일대표부에게 한일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를

16 유진오, 『한일회담 제1차 회담을 회고하면서』(외무부외교안보연구원, 1993), 12쪽.

17 유진오(1993), 위의 책, 9쪽.

18 대한민국정부, 『대일배상요구조서』(대한민국정부, 1949), 1쪽.

19 문화재를 포함한 현물의 목록은 이상호, 『『대일배상요구조서』해제』, 『한일민족문제연구』 35호(2018), 276-277쪽 참조.

지시했다. 한국정부는 한일회담 개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해 국내 자료를 활용하기가 어렵고 일본의 자료를 입수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당시 외교부의 직원은 20여 명 정도로 한일회담을 위한 자료도 조서 정도였고²⁰ 한일회담 준비를 위한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정부는 한일회담 관련 자료 수집과 일본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유진오와 임병직을 일본에 파견한다.

주일대표부의 법률고문으로 파견된 유진오는 9월 10일에 약 50일에 걸친 파견 결과를 출장보고서로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재일동포의 국적문제', '일본 및 일본인에 대한 한국 및 한국인의 재산 및 채권을 포함한 청구권 문제'였다. 이 보고서에서 문화재 반환 문제는 아래와 같이 약탈재산으로 보고되었다.²¹

「미국의 대일초기정책」(United States Initial Post-Surrender Policy for Japan) 및 극동이사회 FEC의 「대일 기본적 방침」(Basic Post-Surrender Policy for Japan)에는 일본은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약탈재산(looted property)을 즉시 반환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 제2차 대전 중 한국은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이 규정은 엄격히 말하면 한국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조정을 요하는 한일 간의 관계는 반드시 제2차 대전 기간 중에 발생된 문제에 국한되어야 할 하등의 근거도 없는 것이므로 약탈재산 반환의 문제는 한국의 경우에는 적어도 일청전쟁까지 소급하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유진오는 미국의 대일초기정책과 대일기본방침으로 인해 약탈재산으로써 문화재를 반환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

20 유진오(1993), 앞의 책, 41쪽.

21 외교부, 『한일회담 예비회담(1951. 10. 20-12. 4) 본회의 회의록, 제1-10차, 1951』, 프레임번호: 99-100.

중에 한국이 교전국이 아니었다는 점, 대일강화회의에 연합국으로 참가할 수 없었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²² 그러나 “조정을 요하는 한일 간의 관계”라는 표현에서 청일전쟁 시기까지 문화재 반환 시기를 소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진오는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 배상과 관련된 규정이 아니라, 청일전쟁부터 시작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화 과정과 36년간의 식민지 지배라는, 즉 불법적·강제적인 일련의 식민지 지배 과정에 대한 ‘조정’이 한일관계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조정’은 과거사의 청산이며, 이것은 약탈재산인 문화재 반환 등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이었다.

2. 일본의 문화재 반환에 대한 인식

일본정부가 한일회담 개최 이전에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 준비했다는 것을 외교문서 상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패전 이후 일본정부가 작성한 ‘할양지에 관한 경제적 재정적 사항의 처리에 관한 진술’과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를 검토해 보면, 한일회담 개최 이전의 동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식을 확인할 수가 있다.

먼저 ‘할양지에 관한 경제적 재정적 사항의 처리에 관한 진술’은 1945년 11월 21일에 외무성에 설치된 ‘평화조약문제 연구간사회’가 작성한 것으로, 대일강화조약 체결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이 중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향상과 근대화가 오로지 일본 측의 공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이미 공평한 세계의 유식자·원주민도 포함해서-의 인식이다. [...] 일본의 식민지 착취 운운하는 설은

22 이에 대해서는 장박진, 『식민지 관계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논형, 2009), 186-239쪽을 참조.

정치적 선언 내지 실정을 모르는 데서 기인하는 상상론에 지나지 않는다”, “이 지역들은 모두 당시의 국제법, 국제관례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취득되었고, 세계 각국들도 오랫동안 일본영토로 승인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²³

위와 같은 견해에서 한일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일본정부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었고, 일본 통치 하에서 조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이 이루어졌으므로 조선에 대한 착취 등과 같은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다음으로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는 1946년 9월 28일에 대장성 관리국에 설치된 ‘재외재산위원회’의 조사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10개의 식민지 및 점령지역에서의 일본인의 활동이 조사되어 있다. 이 중 ‘조선편’은 제1책부터 10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조선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성격, 한일합병 과정을 비롯한 식민지 지배의 실적이 기술되어 있어, 패전 직후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먼저 편자의 한 사람인 스즈키 무네오(鈴木武雄)는 ‘조선편’을 총괄하면서 작성한 ‘조선통치의 성격과 실적’에서 “조선의 경제가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서 병합 후 약 삼십 수년간에 지금 보는 것처럼 일대 발전을 이룩하기에 이른 것은, 확실히 일본의 지도 결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²⁴ “교육기관의 보급·확충에 노력했던 것은, 일본의 조선통치의 성실한 면을 나타내는 것이며, 소위 노예적 정치와는 무릇 대조적인 것이라는 것은 부정할 것도

23 外務省外交資料館所蔵マイクロフィルム, 第7回公開分, 『対日平和条約関係準備研究関係』 第5巻, 740-742コマ. 高崎宗司, 「日韓会談の経過と植民地化責任: 1945年 8月-1952年 4月」, 『歴史学研究会, 『歴史学研究』 第545号(1985), 4-5쪽에서 재인용.

24 大蔵省管理局, 『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 通卷第十一冊朝鮮編第十分冊, 鈴木武雄, 「朝鮮統治の性格と実績 反省と反批判」(発行年不明), 25쪽.

없을 것이다”,²⁵ “공중위생 상황에 대해서도 일본통치하의 조선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 이 비문명적인 위생상태 개선에 대한 노력은 낮게 평가해야 하는 것이 아닌 일본의 조선 통치가 반드시 조선인을 노예 상태에 둘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²⁶ 등으로 일본의 조선 통치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스즈키는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이상과 같은 정당한 항변의 여지가 있으며, “일본의 조선 영유는 본질적으로는 제국주의적, 특히 군국주의적 지배의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서양 국가들의 소위 식민지 정책과 비교할 때, 많은 특이성을 발견할 수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이상주의적인 형태를 명확하게 간취할 수가 있다”²⁷고 주장했다. 즉 스즈키는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는 나쁜 측면도 있었지만, 조선과 조선인을 위한 이상주의적인 지배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의 ‘제7장 제6절: 조선 문화재의 보존과 연구조사’에는 조선 문화재 보호에 대해 “조선에서는 그 시정 당초부터 수탈은 엄격하게 경계했으며, 오히려 종래 등한시 되었던 문화재 존중 정신을 고양하고, 그 보호시설을 충실하게 하여 연구 자료를 정비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에는 없는 것을 행한 것이며, 초대 총독의 현명한 대책에 의한 것이었다”²⁸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일본은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를 보존·보호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사업에 참가했던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의 견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후지타는 ‘조선 고문화재의

25 大蔵省管理局, 앞의 책, 93쪽.

26 大蔵省管理局, 위의 책, 94-95쪽.

27 大蔵省管理局, 위의 책, 106쪽.

28 大蔵省管理局, 『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通卷第四冊朝鮮編第三分冊, 「第七章教育文化政策とその実績」(発行年不明), 88쪽.

보호'라는 글에서 조선에서의 문화재 보존 사업에 대해 "일본의 반도 통치의 빛나는 기념비로써 식자들을 통해 널리 세계 사람들에게 이해시킴과 동시에 반도 사람들에게 이 점만은 영구히 기억할 것을 바란다"²⁹고 기술했다.

한일회담 개최 이전의 문화재 반환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었고, 당시 이루어진 문화재의 발굴·보호 등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에서도 나타나는데,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 하에서 불법적으로 약탈된 문화재를 반환받는다라는 한국 측의 견해와 정반대의 것이었다. 즉 한일 양국은 한일회담 개최 이전부터 조선의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 보호라는 '실적'과 문화재의 '약탈'이라는 상반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둘러싼 대립은 이미 한일회담 개최 이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다.

Ⅲ. 초기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

1. 제1차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

1) 한국 측의 정치적 해결 요구

한국은 1951년 7월 9일, 미국에게 대일강화회의 참가 배제라는 통고를 받은 이래, 일본과의 양자 회담을 준비하였다. 한일 양국은 GHQ의 알선을 바탕으로 제1차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제1차 회담은 예비회담(1951년 10월 20일-1952년 2월 14일)과 본회의(1952년 2월 15일-4월 15일)로 진행되었다.

29 藤田亮策, 「朝鮮古文化財の保存」, 『朝鮮學報』 第1集(1951), 245-246쪽.

문화재 반환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예비회담 시기였다. 1952년 1월 9일에 열린 비공식회담에서는 본회담 개최일, 친선사절과견, 선박문제, 그리고 문화재 반환 문제 등이 언급되었다. 한국 측은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 2월부터 개최될 본회의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문화재 반환을 언급하고, 그것이 실현될 경우 “그 자체의 금전적 가치에 비교할 수 없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종류의 것은 약탈재산으로써 다른 나라에게는 반환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본이 큰 희생을 하는 것 없이 선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³⁰고 설명했다.

문화재 반환 문제는 이어진 본회의에서 제1회 청구권위원회부터 제3회 청구권위원회까지 논의되었다. 제1회 청구권위원회(1952년 2월 20일)에서 한국 측은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협정 요강 한국측 제안’(이하, 8항목)을 일본 측에게 제출한다. 이 중 문화재 반환 문제와 관련 있는 것은 ‘한국에서 가져온 고서적·미술품·골동품, 기타 국보·지도 원판 및 지금과 지은을 반환할 것’이라는 제1항목이었다. 한국 측은 이를 통해 문화재 반환을 요구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목록은 아니었지만, 한국 측이 대략적으로 무엇을 요구할지가 처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한국 측은 제2회 청구권위원회(2월 23일)에서 8항목의 취지와 그 법적근거를 각 항목별로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문화재 반환 문제와 관련된 제1항목에 대해서는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등 국보에 대한 문화적·정치적 견지에서 한국에게 반환할 것을 희망한다. 그 법적근거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원래 위와 같은 재물은 부자연스러운, 즉 탈취 또는 한국의 의사에 반해 가져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인식하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자발적으로 반환해 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³¹ 또한 한국 측은 반환의

30 「金公使との会谈要旨」, 記入なし, 1952年 1月 9日, No.396.

31 외교부,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청구권 분과위원회 회의록, 第1-8차,

법적근거로 대일강화조약 제4조를 들 수가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요구보다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 패전 이후, 극동위원회가 대일기본정책으로 내건 '수탈재산에 대한 배상'을 바탕으로 일본이 여러 국가들에게 많은 재산을 반환하고 있듯이 일본이 조선에서 수탈한 국보나 문화재들을 한국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³² 즉 한국 측은 자국의 의사에 반해 수탈당한 문화재를 권리로써의 반환이 아닌, 정치적인 해결을 통한 반환을 일본 측에게 요구했던 것이었다. 법적 의무를 통한 반환이 아닌 정치적 해결이라는 한국 측의 이러한 자세는 제2차 회담까지 이어진다.

이후 8항목의 토의 원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 측은 일본 측이 동 항목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동 항목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 측은 먼저 한국 측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그것을 일본 측이 검토한 후에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제1항목에 관해서 한국 측은 문화재 반환의 의사가 일본 측에 있는지 물었고, 일본 측은 반출 시기와 문화재 항목 및 반환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다.³³

한국 측은 이와 같이 일본 측의 요구에 대해 제3회 청구권위원회(2월 27일)에서 자료를 제출한다. 제1항에 대한 자료는 '한일 간 청구권협정 요강안 한국측 제안의 상세'(이하, 상세안)가 제출되었고, 도서료(圖書寮), 내각문고, 국회도서관 등 12곳의 문고 및 도서관에 소장된 고서적들과 도쿄국립박물관 등 4곳의 박물관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공예품이 반환의 대상으로 명기되어 있었다.

1952. 2. 20-4. 1』, 프레임번호: 294.

32 외교부, 위의 문서, 프레임번호: 297-298 및 「日韓會談第二回請求權問題委員會會議錄」, 記入なし, No.1176.

33 위와 같음.

제1항과 관련하여 고서적에 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졌다. 일본 측의 각 문고들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서적은 무엇인가, 가능한 한 어떤 서적이냐 알고 싶다, 되도록 완전한 것을 제시해야 한다 등 한국 측에게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할 것을 계속 요구했다.³⁴ 한국 측은 이에 대해 법적인 주장을 하기 전에 일본이 여러 국가들에게 약탈재산을 반환한 것과 같이 한국에게도 자발적인 문화재 반환을 할 것, 구체적인 문화재 목록은 나중에 논의할 것, 정치적인 반환이라는 원칙을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³⁵ 즉 한국 측은 제2회 청구권위원회에서 주장한 것처럼 반환의 여부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먼저 정한 후에, 고서적 등 반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목록을 논의하려고 한 반면, 일본 측은 구체적인 목록의 제출을 계속 요구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재의 반출시기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반출 시기를 일부러 정하지 않은 것은 일본 측의 한일 친선에 대한 성의, 즉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문화재 반환이라는 일본 측의 성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³⁶ 이것은 결국 법적 논의가 아닌, 정치적인 해결을 도모하려는 한국 측의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어서 문화재 반출의 강제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일본 측은 '의사에 반해'라는 표현을 들면서, 취득의 형태는 어떠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대일기본정책요강에 의하면, 탈취, 혹은 강박에 의한 취득으로 그 취득형식을 규정하였으나, 여기서는 법률적으로 보다 정치적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된 것을 전면적으로 표현한 것이니 간혹 유효 합법적으로 취득한

34 「日韓會談第三回請求權委員會議事錄」, 記入なし이하, 「第1次日韓會談第3回請求權問題委員會會議錄」, No.1178.

35 외교부, 앞의 문서, 프레임번호: 316-317.

36 「第1次日韓會談第3回請求權問題委員會會議錄」, No.1178 및 외교부, 앞의 문서, 프레임번호: 318.

것도 있을 것인 바 개인소유 등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반환할 수도 있을 것”³⁷이라고 답변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측은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 법적 논의를 통한 해결보다 정치적 절충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었다. 일본 측이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반환시기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국 측은 서로의 자료를 제출해서 공동으로 문화재를 조사할 것, 반환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의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적인 해결을 수차례 요구했다. 한국 측이 문화재 반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 이유는 초기 한일회담에서 문화재 반환 목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던 것,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취득한 모든 약탈 재산을 즉시 반환한다는 규정이 한국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 그 이유였다.³⁸ 일본 측은 한국 측의 반환을 통한 정치적 해결 요구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후술하듯이 일본 측은 문화재 반환 문제 선례를 조사하고, 제3차 회담에서 의무로써 반환할 문화재는 없다고 주장하게 되는데, 제1차 회담 시기에는 문화재 반환 선례를 조사하고 있었던 단계였거나, 혹은 조사조차 시작되고 있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개진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본 측도 구체적인 문화재 목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국 측의 목록 제출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측의 목록을 검토하는 방식을 취했다.³⁹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제1차 회담 시기에는 반환의 원칙 문제와 목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없었다.

37 외교부, 앞의 문서, 프레임번호: 319-320.

38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류미나(2010), 앞의 글 참조.

39 류미나(2010), 위의 글, 238쪽.

2) 문화재보호위원회의 문화재 반환에 대한 염려

일본 측 교섭 담당자였던 외무성은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 문화재보호 위원회와의 논의를 중심으로 내부논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동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을 정리해 나갔다.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문부성의 외국(外局)으로써 1950년 8월에 문화재의 보호, 관리, 조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1968년 6월에는 문부성 문화국과 함께 문화청으로 통합되었다. 동 위원회는 문부성의 조직이었지만, 독립적인 기관에 가까웠고 문화재 반환 문제와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⁴⁰

외무성은 제1회 청구권위원회(1952년 2월 20일) 직전인 2월 18일, 문화재 보호위원회의 혼마 준지(本間順治) 예술공예과장을 외무성으로 초청하여 조선관계문화재에 관한 문화재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물었다.⁴¹ 혼마는 먼저 고고학적 출토품에 대해 낙랑 관련 유물과 같이 공적으로 발굴한 것은 당시의 법령에 따라 조선의 박물관에 보관하고, 일본에 보낸 것은 극히 적었으며, 도굴이나 매매된 도굴품은 조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선관계 중요미술품 일람표와 같은 것은 작성되지 않았고, 그것을 작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개인소유의 문화재도 그 소유자를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지적했다. 한편 박물관 소장품 목록 작성과 학술 소장품에 관해서는 각각 문화재보호위원회와 문부성에게 공식문서로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날 즈음 문화재를 “조선에게 반환하는 것은 가능한 한 회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혼마는 외무성과의 회의에서

40 외무성은 1953년에 문화재 반환 문제와 관련된 기관을 조사했는데, 문부성은 발언권이 별로 없고, 학계, 미술계의 유력자들이 전문위원으로 다수 포진한 문화재보호위원회의 발언권이 상당히 강하다고 판단했다. 문화재보호위원회의 성격과 이들의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입장은 류미나, 「한일회담 외교문서로 본 한·일 간 문화재 반환 교섭」, 『일본역사연구』 제30호(2009), 134-139쪽.

41 「文化財保護委員会本間氏との会見報告」, 『アジア二課』, 1952年 2月 20日, No.583.

이상과 같이 조선에서 발굴된 것은 당시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발굴되었고, 그 대부분이 조선에 남겨졌으며 일본에 있는 조선관계 문화재의 조사도 어렵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7월 29일에 열린 외무성과 문화재보호위원회와의 회의에서 문화재보호위원회는 외무성이 7월 19일에 의뢰한 ‘한국 서적, 미술공예품 조사 의뢰 건’에 대해 설명했다. 외무성은 한국 측이 권리로서 문화재 반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한일 양국의 친선을 위해서 일본 측이 자발적으로 문화재를 반환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문화재보호위원회는 “외무성 측이 외교상의 수단으로써 중요한 문화재를 양여하기에 이르지 않을지 매우 우려되며, 목록 작성을 좀처럼 수락할 수 없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⁴² 외무성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목록의 전부를 한국 측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며, 사전에 반드시 회의와 연락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문화재 목록의 조사와 작성을 문화재보호위원회에게 요청했다.

2. 제2차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

1) 한국 측의 문화재 목록 제시

제2차 회담(1953년 4월 15일-7월 23일)에서 문화재 반환 교섭은 비공식회담에서 한 번, 청구권위원회에서 두 번이 이루어졌다. 먼저 5월 14일에 열린 청구권문제 비공식회담에서 한국 측은 청구권 문제에 대해 문화재 반환 문제와 군인군속 문제, 징용한국인에 대한 미지불금에 대해 우선적인 해결을 요구했다.⁴³ 일본 측은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 문화재가 일본으로

42 「韓国書籍・美術工芸品調査依頼の件」, アジア局第二課, 1952年 7月 29日, No.583.

43 「日韓會談問題別経緯 (6) (文化財問題)」, 北東アジア課, 1962年 7月 1日, No.535.

도래한 경위는 다양하며, 아주 오래 전에 들어온 것도 있고 정당하게 구입한 것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망라하여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측은 직접 조사한 문화재 목록이 있으며, 여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도 있다고 언급한 뒤에 ‘한국국보고서적목록일본각문고소장’, ‘일본소재한국국보미술공예품목록’을 일본 측에게 제출했다.⁴⁴ 첫 번째 목록에는 도서료, 내각문고, 국회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고서적들의 상세한 목록이 조사되어 있었으며, 두 번째 목록에는 도쿄국립박물관, 나라국립박물관, 개인소유 등의 미술품·공예품들의 상세한 목록이 조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목록들은 ‘단 일부 조사 미완료’, ‘단 일부 조사 미완료·추가 보충 필요’라고 표시된 미완성 자료들이었는데, 한국 측이 문화재 목록을 계속적으로 조사한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제2회 청구권위원회(5월 19일)에서 한국 측은 위의 두 가지 목록에 대해 일본 측의 조사 현황을 물었다.⁴⁵ 일본 측은 해당 목록들을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전쟁 직후 조사한 것이 있다, 재일 한국 학생과 한국인 학자가 조사한 것이 있다, 국보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정치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으며, 한국의 학자들과 이승만 대통령도 국보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측은 제3회 청구권위원회(6월 11일)에서 먼저 정식회담에서 문화재의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은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전문 담당자들 간의 비공식회담을 열고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할 것을 일본 측에게 제안했

44 목록의 자세한 내용은 「韓國國寶古書籍目錄日本各文庫所藏(但一部調査未了)」, 北東アジア課, 記入なし, 文章番号: 379 및 「日本所在韓國國寶美術工芸品目錄(但一部調査未了・要追補)」, 記入なし, No.381을 참조

45 「日韓交渉會議事要録(一二) 第二回請求權關係部會」, アジア局第二課, 1953년 5월 19일, No.693.

다.⁴⁶ 한편 한국 측은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의 국보에 대한 조사 상황을 물었고, 일본 측은 “고서적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불러 조사를 의뢰하고 있지만, 방대한 양이기도 하고, 책 한 권마다 확인해 가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예산이나 입수 관계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개괄적인 조사가 된다는 것이었다. 아무튼 개괄적으로 조사할 것을 의뢰하고 있는데, 가까운 시일 안에 회답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 측은 그와 관련된 그룹을 만들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한일 양국은 ‘한국관계문화재조사’에 관한 비공식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한국관계문화재조사’에 관한 비공식 회담은 제3차 회담이 끝날 때까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전문 담당자, 담당 사무관들이 문화재의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위해 개최하려고 했던 것에서 볼 때, 제5차 회담부터 열린 ‘전문가회의’와 같은 것으로 추측된다.

전문가회의는 문화재의 반출 경위와 소재 파악 등 문화재의 사실관계에 대해 한일 양국의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회의였다.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전문가회의 개최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그 요구를 받아들였고 전문가회의를 통해 문화재 목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문화재인도품목 작성의 밑바탕이 되었다.⁴⁷ 즉 한국 측은 제2차 회담부터 문화재의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상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문화재 반환 목록을 작성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2) 문화재 관계자의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견해

제2회 청구권위원회이 끝난 직후, 외무성은 문화재보호위원회 및 도쿄국립박물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외무성은 먼저 한일회담의 간단한 경위와

46 「日韓交渉會議議事要録(二二) 第三回請求權關係部会」, アジア局第二課, 1953年 6月 11日, No.693.

47 전문가회의 개최와 관련된 논의는 엄태봉,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협상의 재조명」, 『아태연구』 제26권 제2호(2019), 211-214쪽을 참조.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관심을 설명한 뒤에 동 문제에 대한 양측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반박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자료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도쿄국립박물관은 박물관 관계 문화재를, 문부성과 문화재보호위원회는 서적 및 학술보존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합의했다. 도쿄국립박물관은 회의가 끝날 무렵 “만일 문화재를 한국 측에게 인도한다면, 그 전에 문화협정 체결에 대해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하고, 일본 측도 ‘오타니 컬렉션’⁴⁸을 한국 측에게 요구할 것을 언급했다.⁴⁹

한편 6월 11일자 ‘일한교섭 처리방침에 대해서(관계각료양해안)’에서 일본정부는 한일회담의 각 현안문제에 대한 방침을 세웠다.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 관계 문화재의 약간을 한국에게 증여한다”는 방침이 세워져 있었다.⁵⁰ 이 방침을 바탕으로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 수석대표는 제3차 회담에서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 “법률문제를 떠나 한국 측의 독립을 축하한다는 견지에서 일본정부가 적당한 것을 드리는 것이 된다”⁵¹고 한국 측에게 제안하게 된다.

외무성은 ‘일본소재한국국보미술공예품목록’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6월 23일에 도쿄예술대학의 후지타 료사쿠를 방문했다. 후지타는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총독이 조선의 고미술품이나 골동품 등이 산실될 것을

48 오타니 컬렉션은 오타니 코즈이(大谷光瑞)를 중심으로 한 오타니 탐험대가 서역(西域) 지방을 탐험하면서 발굴한 유물이다. 오타니 탐험대의 서역 탐험은 1902-1904년, 1908-1909년, 1910-1914년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해당 유물은 효고현의 니라쿠소(二楽荘)에 있었으나, 건물 채로 매각되면서 1919년에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총독에게 기부되었고, 그 후 조선총독박물관에 보존되었다. 『韓国關係文化財追加參考資料』, 文化財保護委員會, 1958년 2월 28일, No.567. 오타니 컬렉션은 일본의 패전 이후, 조선에 남겨졌고 현재 중앙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49 『韓国關係文化財調査に関する打合』, アジア局第三課, 1953년 5월 20일, No.584.

50 『日韓交渉処理方針について(關係閣僚了解案)』, 記入なし, 1953년 6월 11일, No.1053.

51 『再開日韓交渉議事要録請求權部会第二回』, アジア局第二課, 1953년 10월 15일, No. 173.

우려하여, 총독박물관을 설립하고 그것들을 수집하여 총독박물관에 보관했다고 설명했다. 그 후에도 조선출토문화재보호정책이 이어졌는데, 1931년에 제정된 '고적명승보존령'을 통해서 일본의 국보에 해당하는 고미술품을 국보로 지정하여 이들이 산실되는 것을 방지했다고 설명하고, 그러한 것들은 일본에 거의 들어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나카 미츠아키(田中光顕) 백작이 반출한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데라우치 총독에 의해 조선으로 돌아왔다는 데라우치 총독의 조선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일화를 설명하기도 했다.⁵²

3. 제3차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

1) 반환의 법적의무를 둘러싼 대립

제3차 한일회담(1953년 10월 6일-10월 21일)에서 문화재 반환 문제는 제2회 청구권위원회(10월 15일)에서 논의되었다.⁵³ 먼저 한국 측은 5월 14일에 제출한 '한국국보고서적목록일본각문고소장'의 추가분으로 '한국국보고서적목록(제2차분)'을 일본 측에게 제출했다.⁵⁴ 일본 측은 한국 측이 제출한 자료들을 조사해본 결과, 그 대부분이 메이지 시대 이전에 구입한 것으로 정당한 수단으로 일본에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를 계기로 반환의 법적의무를 둘러싼 논의가 시작된다. 일본 측은 해당 목록의 문화재를 조사한 결과, 약탈품과 같은 부당한 것이 없었으며, "일본이 의무로써 반환할 것은 없고, 청구권 문제와는 별개의 기초로 생각하여, 이 문제는

52 「朝鮮の美術品、骨董について」, 記入なし, 1953年 6月 23日, No.585.

53 제2차 회담에서 청구권위원회가 두 번 개최되었다. 제3차 회담은 구보타 발언으로 인해 모든 의제들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2주 만에 종료되었다.

54 동 목록의 자세한 내용은 「韓國國寶古書籍目錄(第二次分)」, 北東アジア課, 記入なし, No.380을 참조.

문화협정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⁵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지금까지 법적 요구가 아닌 자발적인 반환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이 이제 와서 “의무적으로 반환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모두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한국 측도 법적 견해를 명확히 주장할 것”⁵⁶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문화재 반환 의무는 없다는 일본 측의 의견에 대해 한국 측은 법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정치적 해결을 통해 일본 측이 자발적으로 문화재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한 지금까지의 입장을 변경하여, 법적인 요구를 할 것이라고 일본 측에게 주장했다. 즉 법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한 반환의무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입장이 제3차 회담에서 부각되었던 것이다. 외교문서 상에서 일본 측이 제1차 회담부터 제2차 회담까지의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기록은 없지만, 제3차 회담과 같이 명확하게 반환의무가 없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일본 측의 그러한 태도가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적어도 반대하지는 않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는 제1차 회담이 끝난 후부터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외무성의 조사나 문화재보호위원회의 의견 등을 정리하여 한국 측의 문화재 반환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한 입장을 제3차 회담에서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재 반환 문제의 핵심 사안이었던 반환의 법적의무 문제가 제3차 회담에서부터 부각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55 「再開日韓交涉議事要録請求權部會第二回」, アジア局第二課, 1953年 10月 15日, No. 173.

56 외교부, 『제3차 한일회담(1953. 10. 6-21)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제1-2차, 1953. 10. 9-15』, 프레임번호: 1391.

2) 문화재보호위원회의 증여 반대

외무성은 '일본소재한국국보미술공예품목록'에 대한 조사를 문화재보호위원회에게 의뢰했다.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목록 조사 이후, 10월에 외무성에게 회답을 보낸다. 문화재보호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목록은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468건의 한국출토품과 나라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2건의 한국 출토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없었다. 또한 전자에 대해서는 모두가 구입, 혹은 기증을 통한 정규 절차를 밟아 입수한 것들이며, 학술상 귀중한 자료로써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했다.⁵⁷

한편 외무성은 10월 17일자로 한국 관계 문화재의 약간을 한국 측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해 문부성에게 문의했다. 그러나 문부성은 문부사무관, 문화재보호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이를 찬성하기 어렵다고 외무성에게 회답했다. 제2차 회답 당시 '일한교섭처리방침에 대해서(관계각료양해안)'(1953년 6월 11일)에는 한국 측에게 약간의 문화재를 기증한다는 것이 문화재 반환 문제의 방침이었다. 이 방침이 한일회담과 관계된 관계 각료들의 양해안인 것을 보면, 이 당시 문부성은 문화재 반환 문제의 방침을 양해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10월 17일의 회답에서는 그 입장을 변경했다. 그 이유는 한국 측이 요구한 문화재들을 조사한 결과, 그 양이 방대하고 학술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문부성 및 문화재보호위원회가 그 입장을 변경했다고 추측된다.

문화재보호위원회는 제1차 회답 전부터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 외무성이 한국 측에게 문화재를 반환, 혹은 기증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고, 그것을 회피하고 싶다고 말해왔다. 이와 같은 문화재보호위원회의 입장과

57 「日韓會談に伴う韓国關係文化財の問題について」, 文化財保護委員會, 1958年 6月 6日, No.569.

약간의 문화재를 기증하려는 외무성의 입장은 대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술한 것처럼 외무성은 한국 측에게 문화재의 일부를 기증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지만, 문화재보호위원회는 이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로 인해 외무성은 문화재의 “증여에 대해 관계부처 간에 사무적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양해를 얻기에 이르지 않고 있다”⁵⁸고 생각하고 있었다.

IV. 맺음말

본고는 초기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 논의가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일회담 개최 이전의 문화재 반환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과 초기 한일회담 시기의 문화재 반환 문제 논의 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이하에서는 본론의 논의를 요약·정리하기로 한다.

한일회담 개최 이전의 문화재 반환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은 정반대였다. 한국정부는 『대일배상요구조서』를 통해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강제적이었으며, 문화재도 강제적으로 반출·약탈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 또한 문화재 반환에 큰 관심을 표명하면서, 일본에게 반드시 문화재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천명했다. 반면 일본 측은 일본의 조선 통치는 합법적이었고 일본이 조선을 발전시켰으며, 문화재 또한 합법적으로 발굴·보호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반된 인식은 한일회담 개최 이후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제1차 회담 시기의 문화재 반환 교섭의 특징은 한국 측이 문화재 반환

58 「韓国文化財の提供について」, 亞一, 1953年 10月 23日, No.567.

문제에 대해 정치적인 해결을 요구했다는 점과 문화재 목록이 처음으로 제출·논의되었다는 점이다. 한국 측은 반환받을 문화재 목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일본 취득 약탈 재산의 반환 규정이 한국에게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요구가 아닌 정치적인 해결을 도모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고 한국 측의 정치적인 해결 제안은 제2차 회담까지 이어졌다. 제3차 회담에서는 일본 측의 문화재 반환에 대한 법적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계기로 법적 해결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한편 이 시기, 문화재 목록이 처음으로 제시·논의되었다. 일본 측은 반환의 여부라는 원칙 문제의 논의 이전에 한국 측이 먼저 문화재 목록을 제출하고 일본 측이 이를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 측은 문화재 목록을 제출하고, 한일 양국은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제2차 회담과 제3차 회담에서도 한국 측은 문화재 목록을 계속 제출했고, 제4차 회담부터 제출된 문화재 목록은 문화재소위원회와 전문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문화재 목록을 한국 측이 제출하고 그것을 논의하는 방법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제1차 회담 시기에 반환의 법적의무 문제의 전 단계로써 한국 측의 정치적인 해결 요구가 있었고, 제4차 회담부터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던 문화재 목록의 제출·논의라는 방법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제2차 회담 시기의 문화재 반환 교섭의 특징은 전문가회의의 전신인 ‘한국관계문화재조사’에 관한 비공식회담이 합의되었다는 점이다. 문화재의 반출 경위와 소재 파악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일 양국은 제5차 회담부터 문화재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전문가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를 통해 문화재의 사실관계가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었다. 비록 해당 비공식회담이 개최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재소위원회와 함께 문화재 반환 교섭 논의의 틀이었던 전문가회의의 전신이 이미 제2차 회담 때 합의되었던 것이다.

제3차 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의 특징은 반환의 법적의무 문제가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한국 측은 제2차 회담까지 정치적 해결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이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일본 측은 문화재 반환의 의무는 없지만 약간의 문화재를 기증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제3차 회담에서 한국 측에게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요구를 통한 문화재의 반환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반환의 법적 의무 문제는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 과거사 청산을 상징하는 문제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다. 한국 측이 일본 측의 요구대로 문화재를 기증받게 된다면, 문화재 반환을 통해 과거사를 청산하려고 했던 목표가 불가능해지고, 반대로 일본 측이 한국 측의 요구대로 문화재를 반환한다면, 일본 측은 문화재를 불법·부당하게 일본으로 반출한 것을 인정하게 되므로, 한일 양국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한일 양국은 회담 중단기 시기와 제7차 회담 때 이 문제에 대해 인도라는 표현으로 합의했지만, 근본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와 같이 문화재 반환 문제의 핵심인 반환의 법적의무 문제가 제3차 회담에서 부각되기 시작했고, 이를 둘러싼 논의가 제7차 회담 때까지 이어지게 된다.

초기 한일회담에서 문화재 목록의 제출과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문화재 전문가들이 문화재의 사실관계를 논의하는 전문가회의의 전신인 ‘한국관계문화재조사’에 관한 비공식회담이 합의되었다. 또한 반환의 법적 의무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초기 한일회담에서는 문화재 반환 문제의 주요 쟁점들이 드러난 시기였고, 이후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 이러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초기 한일회담 시기의 문화재 반환 문제 논의는 향후 문화재 반환 교섭 논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외교부, 『한일회담 예비회담(1951. 10. 20-12. 4)본회의 회의록, 제1-10차, 1951』.
_____,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청구권 분과위원회 회의록, 第1-8차, 1952. 2. 20-4. 1』.
_____, 『제3차 한일회담(1953. 10. 6-21)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제1-2차, 1953. 10. 9-15』.
대한민국정부, 『대일배상요구조서』. 대한민국정부, 1949.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 「金公使との會談要旨」. 記入なし, 1952年 1月 9日, No.396.
「日韓會談第一回財産請求權問題委員會議事録」. 記入なし, No.1174.
「日韓會談第三回請求權委員會議事録」. 記入なし, No.1178.
「第1次日韓會談第3回請求權問題委員會會議録」. No.1178.
「文化財保護委員會本間氏との會見報告」. アジア二課, 1952年 2月 20日, No.583.
「韓國書籍・美術工芸品調査依頼の件」. アジア局第二課, 1952年 7月 29日, No.583.
「日韓會談問題別経緯(6)(文化財問題)」. 北東アジア課, 1962年 7月 1日, No.535.
「韓國国宝古書籍目録日本各文庫所蔵(但一部調査未了)」. 北東アジア課, 記入なし, No.379.
「日本所在韓國国宝美術工芸品目録(但一部調査未了・要追補)」. 記入なし, No.381.
「日韓交渉會議事要録(二二)第三回請求權關係部會」. アジア局第二課, 1953年 6月 11日, No.693.
「韓國關係文化財調査に関する打合」. アジア局第三課, 1953年 5月 20日, No.584.
「日韓交渉處理方針について(關係閣僚了解案)」. 記入なし, 1953年 6月 11日, No.1053.
「再開日韓交渉會議事要録請求權部會第二回」. アジア局第二課, 1953年 10月 15日, No.173.
「朝鮮の美術品, 骨董について」. 記入なし, 1953年 6月 23日, No.585.
「韓國国宝古書籍目録(第二次分)」. 北東アジア課, 記入なし, No.380.
「再開日韓交渉會議事要録請求權部會第二回」. アジア局第二課, 1953年 10月 15日, No.173.
「日韓會談に伴う韓國關係文化財の問題について」. 文化財保護委員會, 1958年 6月 6日, 569.
「韓國文化財の提供について」. 亞一, 1953年 10月 23日, No.567.

外務省外交資料館所蔵マイクロフィルム, 第7回公開分, 『対日平和条約関係準備研究
関係』 第5巻, 740-742コマ.

大蔵省管理局, 『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 通巻第十一冊朝鮮編第十分
冊. 鈴木武雄, 「朝鮮統治の性格と実績-反省と反批判」(発行年不明).

大蔵省管理局, 『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 通巻第四冊朝鮮編第三分冊.
「第七章教育文化政策とその実績」(発行年不明).

2. 단행본

김동조, 『회상 30년 한일회담』. 중앙일보사, 1993.

김용식, 『새벽의 약속: 김용식 외교 33년』. 김영사, 1993.

이흥직, 『한 사가의 유훈』. 통문사, 1972.

유진오, 『한일회담 제1차 회담을 회고하면서』. 외무부외교안보연구원, 1993.

3. 논문

국성하,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협상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5집, 2005,
369-393쪽.

류미나, 「한일회담 외교문서」로 본 한·일 간 문화재 반환 교섭. 『일본역사연구』
제30호, 2009, 119-147쪽.

_____, 「일본의 문화재 '반환'으로 본 식민지 지배의 '잔상', 그리고 '청산'의
허상」. 『일본역사연구』 제32호, 2010, 213-241쪽.

박훈,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의 전개과정과 쟁점」.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
담의 재조명 2: 의제로 본 한일회담』, 2010, 357-386쪽.

엄태봉, 「한일회담 중단기의 문화재 문제에 관한 연구」. 『일본공간』, 2017, 160-
193쪽.

_____, 「제6차 한일회담 시기의 문화재 반환 교섭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제60호, 2018, 116-159쪽.

_____,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협상의 재조명」. 『아태연구』 제26권 제2호, 2019,
199-228쪽.

오오타 오사무, 『한일 청구권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이상덕, 「대일배상요구의 정당성」. 『신천지』 1월호, 1948, 32쪽.

이상호, 「『대일배상요구조서』 해제」. 『한일민족문제연구』 35호, 2018, 267-283쪽.

조운수, 「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교섭: 일본 정부의 반환 문화재 목록 작성과정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제51호, 2016, 125-165쪽.

高崎宗司, 「日韓会談の経過と植民地化責任: 1945年 8月-1952年 4月」, 『歴史学研究』 第545号, 1985, 2-13쪽.

高崎宗司, 「日韓会談における文化財返還交渉について」, 『朝鮮史研究会論文集』 第23号, 1986, 35-53쪽.

長澤裕子, 「解放後朝鮮の対日文化財返還要求と米国: 日本の敗戦から対日講和条約締結まで(一九四五~一九五一年)」, 『朝鮮史研究会論文集』 第五十五集, 2017, 113-146쪽.

藤田亮策, 「朝鮮古文化財の保存」, 『朝鮮學報』 第1集, 1951, 245-262쪽.

森田芳夫, 『韓国における国語・国史教育: 朝鮮王朝期・日本統治期・解放後』 67. 解放後の震檀学会の活動, 1987, 386쪽.

국문초록

본고는 초기 한일회담(1차-3차)의 문화재 반환 교섭을 외교사적으로 검토하고 그 특징을 밝히면서, 이 시기의 논의가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 갖는 의미를 분석한 연구이다.

한일회담 개최 이전의 문화재 반환에 대해 한국정부는 문화재가 강제로 반출·약탈됐다고 인식한 반면, 일본정부는 문화재를 합법적으로 발굴·보호했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은 한일회담 개최 이후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초기 한일회담에서는 문화재 목록의 제출과 논의라는 방식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비록 실제 개최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이 문화재의 소재 파악 및 반출 경위 등을 논의하는 전문가회의의 전신인 '한국관계문화재조사'에 관한 비공식회담이 합의되기도 했다. 또한 문화재 반환 교섭의 핵심 문제인 반환의 법적의무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초기 한일회담에서는 문화재 반환 문제의 주요 쟁점들이 나타났고, 이후의 교섭에서 이러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즉 초기 한일회담 시기의 문화재 반환 문제 논의는 향후 문화재 반환 교섭 논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투고일 2019. 9. 23.

심사일 2019. 11. 12.

게재 확정일 2020. 2. 7.

주제어(keyword) 문화재 반환 교섭(negotiations of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제1차 한일회담(1st Korea-Japan talks), 제2차 한일회담(2nd Korea-Japan talks), 제3차 한일회담(3rd Korea-Japan talks), 초기 한일회담의 의의(implications of the early Korea-Japan talks)

Abstracts

The Diplomatic History of the Negotiations of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at the early stage of Korea-Japan talks Um, Tae-bong

This paper examines the negotiations of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during the early Korea-Japan talks and analyzes their implications.

The method of submitting a list of cultural properties to be discussed first emerged during the earlier talk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formal talks in which experts would discuss where to find cultural properties and how to export them were also agreed upon. The negotiators additionally began to shed light on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which was key to these diplomatic talks.

This paper shows that the main issues concern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which later shaped the discussions that followed, were raised early during the series of Korea-Japan talks. In short, the initial stages of the discussions on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established the basic framework for subsequent negotiations on returning cultural property.

